#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552

발의연월일: 2021. 9. 14.

발 의 자: 안병길・구자근・권성동

김선교 · 김태호 · 박대수

배준영 · 서병수 · 서일준

성일종 · 송언석 · 유의동

이종성 • 정찬민 • 조경태

최춘식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현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, 사안이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의 정도도 심화되고 있음.

그만큼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,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 는 상황임.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 인력 수요는 최소 55명이나 2019년 12월 기준 우리의 국제해양법 전 문인력은 22명에 불과한 실정임.

이에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문"을 "해양수산부문(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	제31조(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
등) ① 정부는 <u>해양수산부문</u> 의	등) ① <u>해양수산부문(국</u>
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이를 효	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)
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	
수·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	
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